

2. 주요내용

-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4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호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0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통신전술차량호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37.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	표적탐지레이더진지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53.2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3	발칸방공진지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4	전자전기지 장비호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8.7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5	시가지전술 훈련장 구조물(14종)	지상1층	철골조	18~3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6	예비군훈련장구류 보관창고	지상1층	조립식구조	15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7	예비군훈련통제실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4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8	항공기 운항실 및 관제탑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1,650.3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9	현공진지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8.7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0	소형전술차량호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2.6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관세청공고제202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정부혁신·조직관리 전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34명, 8급 31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2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교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신설한 기구(정보개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병 무 청 장